

검 토 의 견	보 완 내 용	비 고
· 교통부문 -자생적개발유도를 위해 공동주차시설확보 필요 -기존도로의 확폭이 현실적으로 불가할시 공동주차 등의 대응 방안 강구 필요	대상구역내의 주차장 용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적용	반영
· 교통부문 -기존4m도로는 6m 이상 확폭이 필요하며 건물에 소방호스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 계획 수립 필요	건축선 후퇴를 통해 도로부분의 확폭을 유도하며 비상시 차량진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단, 필지체계상 모든 도로를 6m로 확폭하기는 불가능. 6m미만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원칙으로 하는 주차에 대한 상세 계획지침코드를 적용함으로써 6m미만의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하고 비상시에만 차량접근을 허용.	반영

지하철운임범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98	2000년 7월 일	교 통 위 원 회
-------	-----	------------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28일

다. 상정일자 : 2000년 7월 3일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가. 제안사유

- 운송원가의 55%에 불과한 운임수준으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개선과 부채문제 해결을 위하여 운임범위를 조정하고자,
-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결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본운임 : 500원 → 600원 이하(20% 인상)
- 2구간운임 : 600원 → 700원 이하(16.7% 인상)
- 이동구간제 : 5km마다 73원 → 80원 이하(10% 인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 태 호)

가. 지하철요금 결정과정

- 시장이 운임범위를 정하고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운임범위 결정 → 운송기관간 협의 → 시장이 운임범위 결정, 결정된 운임범위 내에서 시장이 운임을 결정하여 시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런 복잡한 과정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시장이 이미 내부적으로 요금을 정하고 관계기관(철도청)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나머지는 명분을 얻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며, 시의회의 결정위는 시내버스요금과 같이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

나. 공사 부채현황

- '99년말 양 공사부채는 4조 8,150억원으로 시 전체 부채의 7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철공사만 보더라도 건설당시 부채 1조 7,602억원의 상환이 영업수입에서 불가능하여 재차입 등으로 2조 8,260억원으로 증액된 것임.

다. 부채대책

- 건설부채 -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영부채 - 공사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p>-요금현실화</p> <p>라. 요금인상의 불가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송원가 55% 수준의 운임으로는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100원 인상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에 630억원 수입증대 -2001년에 1,377억원 수입증대로 운임이 운송원가의 55%에서 59%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p>4. 질의 및 답변요지</p> <p>생 략</p> <p>5. 토론요지</p> <p>없 음</p> <p>6. 소위원회</p> <p>미 구 성</p> <p>7. 심사결과</p> <p>서울특별시(교통관리실) 조정안과 의견이 같음.</p> <p>8. 소수의견의 요지</p> <p>없 음</p> <p>9. 기타 필요한 사항</p> <p>없 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지하철운임범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598</td> <td style="width: 30%;">제출년월일 : 2000. 4. 28</td> <td style="width: 40%;">제 출 자 : 교통위원회</td> </tr> </table> <p>1. 건 명 : 지하철 운임범위 조정</p> <p>2. 제안사유</p> <p>가. 운송원가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운임수준으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개선과 부채문제 해결을 위하여 운임범위를 조정하고자,</p> <p>나.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골자</p> <p>가. 기본운임 : 500원→600원 이하(20% 인상)</p> <p>나. 2구간운임 : 600원→700원 이하(16.7% 인상)</p> <p>다. 이동구간제 : 5km마다 73원→80원 이하(10% 인상)</p> <p>4. 참고사항</p> <p>가. 관계법규 : 도시철도법 및 서울시물가대책</p>	의안 번호	598	제출년월일 : 2000. 4. 28	제 출 자 : 교통위원회	<p>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철도법 : 제15조의 2(운임의 신고) ①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조례 : 제10조(의견청취) ①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지하철 운임범위 조정(안)</p> <p><input type="checkbox"/>운임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전 : 인가제(지하철 운영기관의 인가요청→시·도지사의 인가) ○변경후 : 신고제(시·도지사의 운임범위결정 후 지하철 운영기관이 운임을 정하여 신고) <p>※근거법령 : 도시철도법 제15조의2('99.4.15 개정)</p> <p><input type="checkbox"/>운임조정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시·도지사) : 운임범위 검토 및 협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임검토범위 → 시의회 의견청취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운임범위 결정) ○2단계(지하철 운영기관) : 운송기관간 사전 협의 및 신고, 조정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송기관간 협의 → 운임조정신고(시장이 정한 범위내) → (시)운임신고사항 통보(시장→재경부, 건교부장관) <p>※시·도지사가 운임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시철도법에 의해 운임조정 이전에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실제 운임결정은 연락운송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상한선까지 운임인상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아래로 정해질 수도 있음.</p> <p><input type="checkbox"/>운임수준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임수준 : 수송원가의 55.1%(운임현실화율) -영업수익 541원/수송원가 982원(승객 1인당)
의안 번호	598	제출년월일 : 2000. 4. 28	제 출 자 : 교통위원회		